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임법령 형식 정합성 확보〉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95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위임법령 형식 정합성 확보	2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인선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3.
3. 회부연월일 : 2025. 3.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 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 법령은 제출서류의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법령 형식과 실체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입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위임법령 형식 정합성 확보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대상 선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제2항제3호).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서류	3. ----- <u>산업통상자원부령</u>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7조는 국내복귀기업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대통령령, 부령 및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

[표 2] 현행법 제7조에 따른 위임법령 등의 형식

위임조문	위임사항	위임법령 등
제1항제1호	지원대상 선정요건① 既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과기간	대통령령
제1항제2호	지원대상 선정요건②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부령
제1항제3호	지원대상 선정요건③ 그 밖의 정책목적 달성	대통령령
제2항본문	지원 신청시 각종 기준 및 절차	부령
제2항제3호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대통령령
제3항제1호 ~ 제4호	국내복귀 진행 중인 기업의 지원대상 선정요건 - 신·증설, 청산·양도, 축소 등 완료 기한·기준	고시
제4항	국내복귀기업 선정 여부 결정	대통령령
	선정확인서 발급	부령
제5항	변경통지의 대상	대통령령

이 중 현행법 제7조제2항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거나(제1호, 제2호),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제3호) 하고 있으며, 각종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제2항본문)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¹⁾.

[표 3] 참고조문: 현행법 제7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3.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u>

1) 참고로 현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행법 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만 규정하고 있고(참고자료 참조), 현행법 제2항본문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제출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상 위임입법 형식인 대통령령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제출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법률과 실제 행정입법 형식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통상 대통령령은 국정의 통일적 추진 및 집행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비해, 부령은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복제·서식 등과 같은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서류(참고자료 참조)는 신청기업 정관, 현지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외사업장 관련 증명 서류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인 국내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함.

이러한 서류는 현행법에 따라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제출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①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기업 정관
2.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역문 첨부)
3.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해외사업장(국내복귀의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증명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생산제품등”이라 한다) 종류 등]
5. 영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첨단기업등”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6. 삭제 <2020. 3. 12.>
7. 해외진출기업의 해당 신청연도와 직전 2년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8.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9.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0.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명부
11.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부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2.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

명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3. 해외진출기업의 임원명부

14. 해외진출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15. 해외진출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16. 신청기업의 해당 신청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7.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8.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단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9.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20. 신청기업의 임원명부

21. 신청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22. 신청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23.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4.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5.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이 과거 3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명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련 서류(청산종결 등기 신고서·접수증, 청산인 신고서·접수증, 폐업 신고서·접수증 등)

나.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 다.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 라.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
- 마.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에 따른 매각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 2.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및 해외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가.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연도
 - 나.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연도
- 3.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 가. 국내 신설·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등 명세
 - 나. 건축물 신축, 공장건축면적 확대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허가서(신고확인증)
 - 다. 신축·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사용승인서
 - 라. 추가 설치한 생산시설·설비 관련 서류(제조시설 명세서 등)
 - 마. 공장·사업장의 신설·증설과 관련한 건축물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 바. 시설·설비 설치와 관련한 생산시설·설비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 4.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첨단기업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 5.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